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1차 워크숍

: 학교폭력 피해 학생·가족 지원 대책

일시 4월 28일(목)5시30분

장소 홍사단 강당

- 주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홍사단 교육운동본부
- 주최 :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학생생활연구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청소년문화포럼 '가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준)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1차 워크숍

언제나 그렇듯, 벌써 식어버렸지만 불과 1달여 전에 '학교폭력'은 우리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물 만난 고기마냥 언론은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일삼았고 이로 인해 여론은 악화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정부는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문제의 본질적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학교폭력을 구조적으로 양산할 위험마저 있는 스킨폴리스, 병영체험, CCTV등의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감시와 처벌 위주의 정책이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의 보호·지원·교육 등을 위한 단기적 대책과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우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첫 워크숍의 주제를 '학교폭력의 피해학생/가족의 지원대책'으로 잡았습니다.

- 심성보(홍사단 교육운동본부, 부산교대 교수)

학교폭력 피해자 구조, 정부에서 나서라! | 3쪽

- 조정실(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코리아이 www.uri-i.or.kr 대표)

학교 안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 이한섭(학생생활연구회, 광명고 교사) | 8쪽
- 김한솔(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 14쪽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학교밖 지원대책 | 14쪽

- 박병식(용인대 경찰행정학과)

사법절차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 송병춘(변호사)

의료·복지적 지원체계 구축,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 서천석(서울대병원 정신과 의사)

학교폭력 피해자 구조, 정부에서 나서라

조정실(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우리아이 www.uri-i.or.kr 대표)

성수여중 폭력사건

우리 가족은 2000년 4월 12일,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하기 전까지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남부럽지 않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소시민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매일 작은 가게를 꾸려가며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낙으로 생각하고 큰 욕심 부리지 않고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아이도 큰 말썽을 부리지 않고 성장해 주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편안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학기가 되었고 아이는 새로운 학급에서 새로운 친구, 선생님과 정을 붙여가며 학교생활을 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3월이 지났고 4월에 접어들어 어느 날 아이의 친구로부터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다른 친구에게 금품갈취, 폭행을 당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학교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도 집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한 가해 학생을 만나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하지 말도록 좋게 타일렀지만 그 학생은 마치 저를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 이후로도 계속 우리 아이를 폭행하였습니다. 저는 결국 가해 학생의 어머니를 만나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의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의 행동을 계속 부인하였습니다. 저와 평행선을 긋는 이야기만을 나누고 저는 마침내 언성을 높여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폭행했던 가해 학생은 6개월 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문제가 되었으나 학교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학생들이 빼앗긴 돈을 담임선생님이 물어주고 사건을 무마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 가정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가해 학생은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선량한 다른 학생들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가해 학생과 학부모를 만난 사실을 가해 학생이 그 학교의 3학년 선배에게 전하자 3학년 선배 5명이 우리 아이를 학교 화장실로 끌고 가 심하게 폭행한 후 다시 방과 후 선배 중 한 명의 집으로 끌고 가 다시 폭행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우리 아이와 같이 평소에 폭행을 당했던 같은 반 친구 11명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너무

심하게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져 기절하고 머리채를 얼마나 잡아 흔들었는지 머리가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선배의 집에서 11명의 반 친구들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학부모 회장으로 있던 가해 선배의 어머니가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가해 선배들은 자기 방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다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부모가 있는 집 안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이 발생하고 저는 우리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취했습니다. 담임선생님께는 “우리 아이가 지금 폭행을 당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여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학교 선배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담임선생님은 우리 아이가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습니. 다만 전화한 그날 우리 아이를 가해한 선배 5명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가해 선배들은 폭행 이후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아이에게 “내 눈 똑바로 봐”라고 위협을 가했으며 제가 어떻게 우리 아이를 이렇게까지 때릴 수 있냐고 이야기 하자 제 멱살을 잡고 “경찰에 고발하면 가족을 몰살시키겠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하며 폭행을 했습니다. 딸 같은 나이의 어린 청소년들에게 이런 일을 당하자 참 가슴이 멍멍해 움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같은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들의 보호자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큰 싸움이 일어날 뻔 하였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병원에서 돌아간 후 우리 아이와 같이 폭행 장소에 있었던 11명의 후배들을 소집하여 한강 7갑문으로 끌고 가 11명이 짝을 지어 서로가 서로를 때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싸우는 후배를 짝으로 뽑은 후 “이제 너희들은 우리 휘하에 있으니 어디에서도 그날 있었던 폭행 사실을 이야기 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피해 후배들의 학부모 11명이 연판장을 써 진정서를 내기로 하였지만 후에 학교 측에서 알고 부모들을 호출하여 ‘문제를 삼아서 고소할 경우 피해 학생들도 서로 짝을 뽑았고 우리 아이의 폭행 현장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공범으로 함께 처벌 하겠다’고 하여 학부모들은 진정서를 내는 것을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후에 피해 학생 11명은 실제로 일진회가 되었다고 하니 우리 학교의 대응이 얼마나 한심한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가해 학생들이 다녀간 다음날 저는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가해 선배들이 다녀간 것에 대한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가해 선배들의 학부모들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가해 선배들의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보상금을 얼마를 받으면 되냐’는 등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가해 선배들의 학부모가 진정으로 자신들의 자녀들의 행동을 사과해 주었다면, 그리고 조금만 성의를 보여주었다면 같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너그러이 용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마치 제가 아이의 아픔을 돈으로 바꾸려는 속물처럼 대하지만 않았더라도 저는 우리 아이를 가해한 아이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재판과정

저는 그날로 밤을 새워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하게만 살아왔던 제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난감할 따름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고소장을 들고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담당 검사는 없었고 검사시보와 형사반장(수사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학교를 찾아가 5명의 가해 선배들을 불러 조서를 꾸몄습니다.

조서가 꾸며져 다음날 검사실로 출두하자 전날 자리에 없던 담당 검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담당 검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려 하자 담당 검사는 고소장으로 제 얼굴을 때리며 “애들끼리 치고 받고 싸운 것을 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받으려고 하느냐”며 고소장을 집어 던졌습니다. 저는 담당 검사를 바지자락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끝내 담당 검사는 고소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소장을 들고 다시 관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검찰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고 하며 제게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생전 처음 이런 일을 겪게 된 저는 사방팔방으로 고소장을 들고 다니다 결국 동부지검 민원실에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뀐 담당 검사가 기존에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전의 수사 기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전에 사건을 조사한 검사실로 가서 수사기록을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고소장을 받아주지 않았던 검사는 수사관에게 “야, 우리가 언제 수사했냐?” 뭐 그런 일 없다고 미친 것 아니냐며 제게 욕설을 퍼 부었습니다. 검사를 만나기 전 수사기록을 전해 주기로 했던 담당 수사관도 서슬 퍼런 검사의 반응에 움찔해져 수사기록이 없다고 발뺌을 하여 결국 수사기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교육청, 교육부등 온갖 관련 지어질만한 곳에도 진정서를 넣었으나 어느 한 곳 조사가 이루어진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지껏 성실하고 진실 되게 살아가면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한 사람의 노력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는 행동을 보고 무력감에 휩싸여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우리 가족의 생계 수단인 작은 가게도 접어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 아이의 치료비며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느라 그나마 가지고 있던 가게도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의 생계를 포기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당한 부당한 대우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바뀐 검사가 사건을 맡아 조사한 내용으로 소송에 들어갔지만 법원에서는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이후 제가 시청 게시판에 올린 호소의 글을 보고 만들어진 DAUM 카페의 “성수여중 폭력 사건”의 네티즌들의 도움으로 각계각층에 서명운동, 온라인 시위, 항의 메일을 보내는 등의 노력으로 법원에서 형사판결이 결정되어 가해 선배들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형사 판결 후 민사 소송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민사 소송이 이루어지려면 피해 학생이 신체 감정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신체 감

정 중 정신적 감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정신과 폐쇄 병동에 입원해 15일에서 30일 정도를 관찰을 당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약물 치료도 중단되며 가족조차 면회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정신 이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의 신체 감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니다. 학교 폭력의 악몽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하는 피해 학생들에게 폭력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이런 제도는 우리 아이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 생각하고 거부하였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신체 감정을 거부하자 결국에는 그동안의 진료 기록을 토대로 민사 소송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민사 소송의 결과 저는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상처뿐인 승리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제게 보상해야 할 치료비며 소송비는 가해자 측에서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아 결국 아직도 저의 몫으로 남게 되었고 결국 저는 개인 파산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를 외면하는 사회

지난하고 힘겨운 싸움을 통해 저는 이 땅에서 학교 폭력의 피해자는 정말 아무데에도 호소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오히려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회, 폭력의 그늘에서 불안에 떠는 자녀들에게 그냥 참도록 가르쳐야 하는 사회, 그리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높이면 ‘자식 팔아 한 몫 챙기려는 부모’로 눈총을 받아야 하는 사회가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이 곳, 우리나라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거리나 외진 곳에서 피해를 입게 되면 그 장소를 피하라 가르치지만 학교는 집단폭행이 이루어져도 사망사고가 일어나도 교육을 시키기 위해 보내야 합니다. 이렇듯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고이므로 개인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이며, 국가 전체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피해를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고 나 몰라라 합니다.

보통 피해를 당한 부모들의 연령층이 30~40대의 연령으로 경제적인 책임이 막중한 시기이나 어린 자녀가 사고를 당했기에 처리 수습이나 치료에 매달려 지내다 보니 직장파업 영업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이 붕괴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도 필요하지만 사후수습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피해자 구조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아이의 피해 사건을 해결하면서 느낀 대책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땅의 학교 폭력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성실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길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피해자 구조 대책 요구안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학교폭력 피해자 구조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1.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의료보험은 고의적인 사고로 처리되기 전에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까지 치료받아야 하는지 기약 없는 물리치료와 정신치료 기간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정신과 치료 30분을 받는데 드는 비용은 15만원 ~ 16만원입니다.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과도한 병원비로 인해 우리 아이 같은 경우도 현재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학교폭력 피해자가 치료 받을 수 있는 지정 병원을 지정하라.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이에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우선 정부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 소송 후 가해자가 확정되면 정부에서는 가해자에게 치료에 소요된 경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3. 신체감정이란 이름 하에 유린되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라

민사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신체 감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정신적 감정을 받기 위해 지정된 정신과 폐쇄 병동에 입원해 15일~30일 동안 관찰을 당하게 됩니다. 그 동안에는 약물치료도 중단되며 가족조차 면회가 안됩니다. 이러한 폐쇄 공간에 갇혀 관찰당한다면 건강한 성인들도 정신적 이상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신체감정을 받기 위한 비용도 500만원 ~ 1,000만 원선으로 이것 역시 피해자 측에서 부담해야 하고 집안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나마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재 감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폐쇄병동에서의 신체감정을 대신하여, 기존의 치료 받았던 진료기록을 기초로 한 진료 기록 감정 혹은 담당 의사의 소견으로 환자의 상태를 판별하는 등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4. 학교폭력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라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우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해결 방법과 대응 방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관이나 민간단체를 설립하여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 종합 지원 센터에 피해자 가족 간 상담 인력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학교 폭력 이후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가 정신과 치료는 대화와 약물 치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원치료는 꼭 필요하나 급격한 아이의 심경 변화나 이상 행동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은 병원보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 가족의 조언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기존의 피해가족들이 새로 발생하는 피해 가족들을 상담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 안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과 학교폭력을 해결을 위한 학교 인의 변화

이한섭(학생생활연구회, 광명고 교사)

1. 현 시스템의 문제점들

1) 피해학생의 보호책이 부실하다.

피해학생의 보호에 대한 보호 대책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제 4조 1항)에 ①심리상담 및 조언 ②일시보호 ③치료를 위한 요양 ④학급교체 ⑤전학권고 ⑥ 기타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으로 명시되어있다. 또한 동법 (제 6조 2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1. 학교 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간의 협조·지원 4.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단체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학교폭력을 당한 경우 ①~③의 보호 프로그램의 비용을 피해자측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만약 가해학생측이 비용부담을 거부하거나 부담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학생이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방안으로 일단 시·도 교육청이나 사립학교가 치료비를 부담하고, 추후 가해 학생측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을 인정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의 문제로 인하여 그 조차 실효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④와 ⑤의 경우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피해학생의 보호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에 있다. 현재 학교별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의 제도의 경우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그 범위가 학교폭력으로 발생하는 부분까지는 해당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왕따보험(자녀의 신체상해사고와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유괴나 납치사건까지 보장)이라는 것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집단괴롭힘이나 학교폭력이라는 문제에 대해 우리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밟으면서 피해학생이 받는 심리적인 상처는 더욱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은 피해학생의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으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모두 자신의 책임만 피하려고 할 뿐이다.

최근에는 학내에서 벌어진 집단괴롭힘 사건에 대해 가해 학생뿐 아니라 그 부모와 학교

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2005년 1월 24일 보도)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24일 중학 시절 집단괴롭힘을 당한 유군(19)군과 가족들이 경기도 교육감과 교사, 운동부원, 학부모 등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유군에게 1억 1천여만원, 유군 부모에게 위자료 700만원씩, 유군 동생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부모는 자녀가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호,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학교 측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유군이 교육현장의 사각지대에서 집단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군은 경기도 Y중학교에 다니다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자 1999년 10월 E중학교로 전학가 사이클부에 들어갔지만 선배와 동급생들이 지능이 모자라고 훈련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행을 당해 환청과 망상 등 비전형 정신증과 적응장애 증상이 나타나자 소송을 냈다. 이와 같은 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학교폭력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에서는 당연히 피해학생의 보호에 대한 대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동법 제 5조 1항에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②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③ 학급교체 ④ 전학 ⑤ 학교에서의 봉사 ⑥ 사회봉사 ⑦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⑧ 출석정지 ⑨ 퇴학처분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에서 바람직한 모습은 가해학생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일 것이다. 이를 위해 가해학생의 불성실 이행, 불응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며 부모연대책임 혹은 가족에 대한 통고들의 연계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들이 피해학생의 상처를 보듬어 주고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③, ④의 조치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덮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며 ⑤, ⑥의 경우 제대로 된 반성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⑧, ⑨의 조치는 학교에서 피해학생을 보호하거나 선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기보다는 학교의 책임을 학생 개인에게 묻는 것이다.

2.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적인 시스템은 무엇인가?

1) 학교의 특수성과 폭력의 보편성

① 학교의 특수성

학교 폭력 문제 해결과정은 교육적 원리로 이루어진다. 폭력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눠 책임여부를 가리기보다는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

하는 과정에 있다. 이 과정에서 폭력 사태의 원인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서 찾는 경향이 존재한다.

문제점 : 현재 학교 시스템에서는 폭력사태를 학교의 교육적 원리로 인해 해결할 수 있는 원리가 부재하다. 구체적인 예로는 피해자가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가해자가 오히려 과도한 보호를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는 학교 폭력의 문제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다.

② 폭력의 보편성

폭력에 대한 사회적 해결과정은 절차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폭력사태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한다. 폭력 사태의 본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문제점 : 폭력사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사건의 발생이후 사후 처벌에 관한 부분으로만 구성될 수밖에 없다. 폭력 사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왜곡시킨다. 구체적인 예로는 폭력의 원인을 가해자 개인의 문제로 파악하며 폭력사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집단의 문제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들며 개인에게 집단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책임지게 만든다.

2) 폭력에 대처하는 학교 안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청소년위원회는 학교차원의 해결방안으로 ① 학생생활규정의 민주적 제·개정을 통해 폭력적 학교 생활지도 구조개선 → 참여와 민주성에 기반한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해 학생생활규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 ② 특성화 된 인권교육을 통해 상호존중 풍토 조성 ③ 적극적인 상담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시행 ④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동아리 활동 활성화로 풍부한 학생문화구축 ⑤ 관계에 기반 한 학급운영이 가능하도록 학급활동 시간 보장 ⑥ 학생문화를 황폐화시키고 학생간의 폭력적 관계를 유도하는 조기등교 및 장시간 학습노동 지양 ⑦ 모범이 징계와 처벌위주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징계 결정 시 자치위원회 회의를 반드시 거치고, 출석정지와 퇴학처분 시도교육청에 사유보고 ⑧ 징계와 처벌 보다 치료 중심의 협의에 중점을 두고 자치위원회 운영 ⑨ 학생복지부 체제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결방안 등을 통해 학교폭력의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다면 우선 학교에는 다양한 자치의 영역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자치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교육적 해결방법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인 지시와 통제로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학교의 교육적 원리로 폭력에 대처하는 학교 안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학교 안에서 자치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방향은 자치활동을 통해 학교 폭력에 대한 대처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한다.

① 학교복지시스템

학교복지시스템은 교육적 원리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우선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집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 과정에 중요한 것은 누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심을 통해 지역사회 사회복지사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아이들 스스로 복지라는 관점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복지시스템을 통해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폭력에 많은 부분이 인간의 이기적인 부분에서 비롯되는데 주변 친구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가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인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② 학교 민주주의

학교 안의 관리와 통제의 문화로 인해 학교 안 폭력문제가 은폐되거나 왜곡되고 심지어는 암묵적인 동의로 폭력이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관리와 통제의 문화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학교 안에 민주적인 구조가 실질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학교 안의 민주주의를 통해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단혀있는 집단의식에서 비롯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폭력의 성격은 집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 안의 폭력은 질서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며 집단 밖으로의 폭력은 방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어왔다. 집단을 방어하기 위한 기제로 공포와 금기가 사용되었으며 사람들의 의식에 폭력이라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집단의 논리이며 사회적 시스템이다. 이에 대항하는 인간의 시스템이 바로 민주주의이다. 자신의 의한 주체적인 통치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집단 안의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소통과 대화이며 합의이다. 학생들의 정치의식은 폭력적인 상황에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상황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응 방식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조건으로 **학생회 법제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 스스로 조직을 꾸리고 그 조직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합리적으로 벌여나가는 것이 바로 학생들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가지고 있는 폭력성은 두 가지 차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폭력성에 대한 인간적 저항의 의미이며 둘째, 사회의 기존 질서에 편입하며 스스로 폭력화되는 순응의 의미이다. 사회적 권력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야말로 사회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에 저항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을 사회적 에너지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③ 학생의 자기보호수단

학생이 자신의 의사와 상반되는 행위를 강요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스스로를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적 제도적 틀은 사법체계를 따를 수 있다. 행정적인 학교시스템과 별도로 존재하는 형태로서 학생재판소를 운영하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일 수 있다.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사태에 대해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며 이는 학생의 자치 능력을 한 단계 성숙시켜내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재판소의 형식적인 내용은 학교 안 학생간 갈등의 해결원칙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학생재판소의 역할이다. 학생들에 의한 자율적인 통제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학생자치의 원칙적인 내용을 지켜나가는 역할을 하며 그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고 개입하는 등의 활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폭력에 대처하는 학교 안 시스템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① 교육의 3주체(교사-학생-학부모)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의 의사와 반하는 어떠한 결정도 학생들에게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교사가 학생에게 요구할 수도 없으며 학부모가 교사에게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다.

교육의 3주체의 상시적인 토론과 의견교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학교별로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학급별로 진행될 수가 있으며 이때 토의와 논의는 주된 방향은 학생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시스템에 대한 논의와 활성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교육의 3주체의 논의 속에서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어야 한다.

② 정치교육

집단 안의 폭력과 집단 사이의 폭력을 해결하는 과정은 정치적인 과정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를 현실화시키고 집단 안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에 학생들이 스스로 적응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폭력적인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소통 그리고 연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내면화시키는 것이다.

③ 평화, 인권교육

집단이 지향하는 가치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그 가치는 평화와 인권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평화와 인권이라는 가치 속에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장하여야 한다.

④ 집단 상담, 또래 상담 등 여러 가지 상담기법들

집단내의 대화, 자신과의 대화를 좀더 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담기법을 집단 내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학생들 간의 문제를 또래 상담을 통해 풀어 가는 과정은 이미 일반화되어 있으며 집단 상담을 통해서도 집단 내의 문제를 표면화시키고 집단 내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

3. 학교 안 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명확하다. 한쪽은 인간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다른 한쪽은 인간으로부터 폭력을 당하였다. 폭력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폭력으로 옹아매어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인의 문제로만 파악할 수는 없지만 개인의 책임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수는 더더욱 없다. 그래서 더욱 학생들의 자치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복지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개인이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고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집단적인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스스로 다스리고 스스로 키우는데 쓸 수 있도록 사회는 학생들에게 배려해야 한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 피해자의 상처가 제대로 아물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며 또한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교육의 주체(교사-학생-학부모)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학교폭력을 진심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학교폭력의 문제를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상의 감소가 아닌' '상처의 감소를 위해 노력하자

김한솔(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준))

학교폭력에 대해 요즘 여론이 뜨겁다. 각기 나름대로 폭력의 원인과 유형을 분석하며 그에 따른 대안책을 앞다퉀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그 대안책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대책들이 단순 학교폭력의 현상을 낮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곁에 들어나는 모습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게 정말 진정한 대책이라 할 수는 없다. 만약 피해학생들과 미래에 피해학생이 될지도 모를 아이들을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싶다면, 그 바탕에는 폭력현상의 억제보다 아닌 상처를 다독여주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럼 학생이 피부로 실감하고 적극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자.

교내 상담소 운영

요즘 스쿨폴리스(School Police)에 대한 말들이 많다. 하지만 이걸 폭력을 예방, 혹은 감시하겠다는 의지일 뿐이지 과연 이게 학생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선 미지수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것보단 교내 상담소를 운영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정신적 치료와 가해학생과의 상담까지 맡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학교 폭력의 근본 원인에는 학업과 집안문제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불안이 포함되어 있다. 가해학생들이 이것을 적절히 표출하고 치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피해 학생의 경우 또한 폭력으로 힘들어 하고 있을 때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조언을 줘야 할 것이다. 이런 정신적인 상담 활동이야말로 예민할 시기의 그들에게 그 무엇보다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

학급공동체 강화를 통한 교실적응 지원

공동체란 인간에게 소속감을 불러일으키고, 서로 의지 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각박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학급내의 공동체가 와해되어 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학급 공동체의 와해는 곧 학우들간 유대의 와해로 이어지고, 이 속에서 학교폭력은 쉽게 발생하게 된다. 더불어 그 피해자에 접근하는 방식 역시 따뜻한 이해가 아닌 냉대와 소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학급 공동체의 유대를 높이는 방법은 담임교사의 역량에 크게 좌지우지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담임교사의 능력을 키우는 방안도 같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신분보장

피해학생이 만약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크게 가시화 한다면 그 순간부터 그 아이는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묘한 차별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즉, 직접적인 압력에서부터 은근한 시선까지 그 학생은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피해학생 뿐만이 아니다. 가해학생 또한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된다. 물론 가해자의 입장이긴 하나, 그것과 별개로 지속적인 낙인이 따라붙는 것이다. 일명 '낙인이론(labeling theory)'에 비추어 생각하자면 이런 차별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오는지 익히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피해, 가해학생 모두가 이러한 고초를 겪지 않으려면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 엄격한 인권보호가 이루어 져야 한다. 즉, 개인의 신분상의 노출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은 오히려 학교와 교사의 도움을 받는걸 꺼려하게 되고 점점 음성화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청소년 자치기구의 활성화와 학교폭력 인식개선

지역 사법기관의 협조를 받아 청소년이 직접 판사, 검사 등의 역할을 맡고 자율적으로 법원을 운영하는 미국의 '청소년 법원'은 청소년 참여 활성화 뿐만 아니라 청소년 비행의 감소효과도 불러온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래집단으로 이루어진 권위(authority)있는 기구는 파급효과도 클 뿐만 아니라 자체인식 정화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보통 청소년 참여를 이야기 할 때 거론하는 이야기 중 유인효과와 자기교육효과를 이야기 하곤 한다. '참여있는 결정일 때 비로소 자발적 이행과 협조가 가능' 하다는 말이다. "청소년 참여와 권익증진 제도화방안 연구?조사"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004) p.11 이러한 청소년 자치야 말로 폭력에 대한 자발적 반성과 생각을 이끌어 내고, 더 나아가 피해학생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다시 학교에 적용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 본다.

학교 폭력의 피해에 대한 지원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시선에서 점검되고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설령 가해자라 할지라도 재적응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거다. 이들의 시선에서 괴리된 정책은 지금껏 자주 그래왔듯 모두의 냉대 속에서 흐지부지되는 냄비정책이 될 뿐이다. 우선 정말 필요한 지원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학교 공동체 내의 인식 개선을 통해 해결 과정에 있어 이중으로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학교밖 지원대책

박병식(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공동대표 정책위원장)

1. 내용 없는 피해자지원정책

지난 3월 4일 교육부장관은 대국민 담화에서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희망할 경우에 다른 학교로의 전학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고, 의료지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과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발표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한 결과이며, 현실적인 피해학생 지원대책이 될 것인가? 이에 대한 필자의 답은 불행하게도 “No”이다.

「기본계획」은 주무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8개 정부기관이 5년간 실시할 정부계획을 담은 것이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한 진정한 정책은 거의 없다. 기본계획이 피해자 지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기껏해야 다음 표의 내용 정도이다(부록을 제외한 41페이지 분량 중 한 페이지에 불과하다).

□ 피해자 치료·재활 방안 강구

- 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피해학생 치료·재활센터 운영 검토(교육부)
 - 피해 학생 치료·재활 지원방안 연구 실시('05~' 07)
- 피해학생 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교육청, 학교)
 - 교육청 차원의 지원방안 강구
 - 피해학생 치료·재활을 위한 예산 확보
 -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안 강구
 - 외부 전문 기관·단체(가) 등과 연계 등
- 학교별로 전문병원 지정·운영(학교)
 - ※ 학교 지정 전문병원 현황('03년 10월) : 총420개
- 피해학생 치료·재활을 위한 성금 모금 및 지원(교육청, 학교)
 - 학교폭력 피해자 중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회 또는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치료·재활을 위한 성금 모금 및 지원
 - 지역교육청 관내에 학교폭력 피해자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도 성금 모금 및 지원 고려

<기본계획 33쪽>

1) 피해자를 위한 전학?

교육부의 자료에 의하면 작년 8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기간 중에 피해학생에게 전학을 권고한 경우가 119건에 달함으로써 전학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같은 자료에는 가해학생의 전학 건수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피해학생만이 전학을 가고 가해학생은 그대로 머무르는 현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 피해학생이 쫓기듯이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는커녕 마치 전학을 대단한 혜택인 것처럼 발표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사태야말로,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대책이 얼마나 빈곤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학교폭력법에 의하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전학」이 있지만, 피해학생에게는 전학이 아니라 「전학권고」이다. 즉, 전학은 가해학생이 가는 것이 원칙이며 피해학생이 가야하는 것은 아니다(물론 피해학생이 원한다면 권리로서의 전학은 더욱 보장해야 되겠지만).

<표>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조치 ('04.8.1 ~ ' 04.12.15 : 4개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기타 조치
4,158건	111건	85건	10건	119건	227건

2)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다음으로, 의료지원을 하겠다는 발표 또한 현실과 매우 다르다. 필자는 이전부터 가해학생측이 가해사실을 부인하거나 긍정하더라도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 게다가 피해학생마저 치료비를 지불할만한 경제력이 없는 케이스를 예로 들면서, 학교폭력법 시행령에 구상권을 규정해야 한다고 누누이 주장하였다. 그러나 책임회피에 급급한 교육부 관료와 학교관리자, 그리고 법시스템에 무지한 몰지각한 인간과 집단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들은 처음에는 국가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애국적 감정론을 전개하다가, 최근에는 구상권을 규정하면 가해학생측이 치료비 지불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로 재무장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학생측이 치료비 지불을 거절한다고 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면, 그것은 이미 구상권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학생측의 재산을 강제집행해서라도 대납한 치료비를 받아낼 때 비로소 구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만약에 가해학생측이 경제능력이 전혀 없어 구상권을 통해서라도 대납한 치료비를 받아낼 수 없는 케이스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 도리이다.

「기본계획」에는 학교폭력 피해자 중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에게는 학생회 또는 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피해학생 치료·재활을 위한 성금을 모금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지원하지 못해 성금을 모금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재정이 열악한가? 과연 이것을 중앙정부가 구상하는 피해학생에 대한 의료지원이라 볼 수 있는가? 이

런 내용을 담당하게(?) 기본계획이라며 발표하는 교육부는 도대체 어떤 감각을 가진 집단인가?

○ 피해학생 치료·재활을 위한 성금 모금 및 지원(교육청, 학교)

- 학교폭력 피해자 중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회 또는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치료·재활을 위한 성금 모금 및 지원
- 지역교육청 관내에 학교폭력 피해자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도 성금 모금 및 지원 고려

<기본계획 33쪽>

한편, 경찰청은 경찰병원 내 「성폭력긴급지원센터」를 「여성 및학교폭력 긴급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여 24시간 상담·치료·신고접수를 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 긴급의료지원시스템을 2006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피해학생에 대한 의료지원책을 내세우지 않아도 될 경찰청이 학교폭력 책임 주무부처인 교육부보다 훨씬 피해학생에게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청의 이 제도는 말 그대로 「긴급」 의료지원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위기관리적 성격이 강하며, 범죄수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에 주목을 할 가능성이 있고, 경찰병원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다지 기대할만한 시스템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

한편,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법률지원도 독자적으로 지원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률구조공단 등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수준으로 이해된다. 사실 「기본계획」에서도 「법률지원」이라는 단어는 이른바 「학교폭력 자수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과 관련하여 한 차례 등장하는 외에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심각하게 고민한 결과로서 제시한 것이 아닌 것이다.

□ 「학교폭력 자수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경찰청, 교육부, 법무부, 문광부)

피해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철저, 관련부처와 협의, 본인(보호자) 희망시 전학 조치 및 의료·법률지원 강구

<기본계획 25쪽>

2. 피해학생을 위한 학교밖 지원체제 구축

1) 현행 체제의 문제점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제도는 많지만 정작 피해학생을 위한 제도는 없다는 데에 있다. 정부 부처가 경쟁이라도 하듯 다양한 정책을 잇달아 제시하고는 있지만, 피해학생 개인을 위한 정책은 거의 없다. 일반명사로서의 「피해학생」은 있으나, 학교폭력을 당하여 피해를 입은 고유명사로서의 피해학생은 없는 것이다. 때문에 정책 및 제도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논의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피해학생을 위해 학교밖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첫째로, 각 부처가 다양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제대로 협의되거나 연계됨이 없이 그저 나열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학교폭력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정부부처가 없다는 점이다. 과거 국무조정실의 주관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 온 「학교폭력 예방·근절관련 업무」가 학교폭력법의 제정으로 2004년 1월 교육부로 이양되었으나,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했다는 것을 이유로 늘 책임을 회피한다.

셋째로, 그렇다고 해서 지역사회의 경우, 시·도교육청이나 시·군·구교육청이 학교폭력 문제에 관한 대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어느 면에서는 기관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넷째로, 중앙정부를 전제로 한 정책은 있으나, 지역사회를 전제로 한 정책은 별로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늘 뜬구름을 잡는 듯한, 구체성이 결여된 논의가 앞서게 된다.

다섯째로, 피해학생이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해결과 지원을 요청할 명확한 창구가 없다는 점이다. 신고전화와 신고망이 많지만, 부처별·기관별로 제각기 운영되고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한데다 각 부처별·기관별 신고전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며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알 수가 없다. 지역사회의 경우에는 이 문제점이 더욱 심각해진다.

<현행 신고망>

- 1588-7179(학생고충상담전화) 및 시·도교육청별 HOT-LINE
 - * 전화한 자가 있는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청으로 연결
- 사이버경찰청(npa.go.kr)의 「학교폭력상담신고센터」와 전국 경찰서·지방청에 설치된 학교폭력신고센터(247개)
-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상담실 1391
- 여성부의 여성긴급전화 1366
-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긴급전화 1388
- 기타 교육청 및 학교별 사이버 신고망 등

여섯째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단체가 중앙에 거의 집중되어 있고 지방에는 대

단히 열악하다는 점이다.

일곱째로, 학교현장이 피해학생의 지원에 소극적이며, 외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

2) One-Stop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피해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필자는 지역사회에 One-Stop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이 서비스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시·군·구교육청이 직접 운용해도 되며, 필요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 운용한다.
- 상담창구 및 접수창구는 하나의 번호로 통일한다.
-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오직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요구사항을 접수하면 된다.
- 피해사실의 내용과 피해학생측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내용에 따라 경찰서, 교육청, 학교, 병원, 민간전문단체 등 기관이나 민간전문가에 연락하여 적절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과 해결방안을 찾아 제공한다.

3. 마치면서

학교폭력법을 제정한 큰 이유의 하나는 피해학생에 대한 법제도적 구제·보호에 있다. 학교폭력법 제1조도 법률의 목적에 관하여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피해학생의 보호를 첫째로 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것처럼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 사이에 피해학생들은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입고 급기야 자살하기도 한다. 이제 한명 한명의 아이들을 보아야 한다. 교육부와 학교 현장은 핑계대기와 책임회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내탓이오”를 외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집단도 모두 피해학생이 더 큰 아픔과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시법절차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송병춘(변호사)

의료·복지적 지원체계 구축,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서천석(서울대병원 정신과 의사)